

인지세 납부 안내문

■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(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전 타입 : 15만원)를 납부하신 후 보관하셔야 합니다. 추후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시 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 및 방법

※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구분	내용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납부기한 및 방법	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·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, 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전자수입인지 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· 우체국 ·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(사본)

■ 인지세 안내

※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참조

구분	세액	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(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)	1,000만원 ~ 3,000만원	2만원
	3,000만원 ~ 5,000만원	4만원
	5,000만원 ~ 1억원	7만원
	1억원 ~ 10억원	15만원
	10억원 초과	35만원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온라인 구매방법

온라인 이용방법(카드결제, 계좌이체 가능)

1. 전자수입인지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'전자수입인지' 검색

2.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,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3. 구매(납부정보 입력)

구분	내용
용도	인지세 납부
과세문서종류	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금액	150,000원
건수	1건



4.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재발행 불가)

오프라인 이용방법(신분증 지참, 현금결제만 가능)

1. 우체국, 은행 방문(방문 전 문의 요망)
2.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3. 전자수입인지 발급

※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